

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복합체육 시설('26.6월 개관예정)로 볼링장, 수영장 등을 활용한 전문·생활 체육프로그램 기획과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시설임
- 나.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동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명 :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(시설형)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,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」 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

○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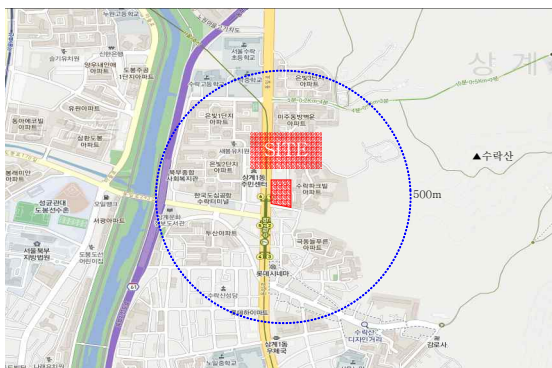
-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, 더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다년간의 유사 시설 운영, 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역량이 요구되는 바,
- 서울시를 대표하는 전문체육시설이자 복합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절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
-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마련
- 서울어울림체육센터(볼링장·수영장·체육관 등) 프로그램 기획 운영
- 체육센터 재산 및 기타 물품 등의 보존·유지관리
- 기타 체육센터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어울림체육센터(연면적 14,780 m^2 , 지하2 지상3)
- 위치 : 노원구 상계동 1268
- 주요시설 : 볼링장, 수영장, 장애인다목적공간, 체육관, 주차장 등
- 위치도 및 조감도



위치도(수락산역 인근)



시설 조감도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'26. 1. 1. ~ '28.12.31.), 신규 위탁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서울시체육회·장애인체육회 공동 수의협약

사. 소요예산(안) : 3,320백만원

- (민간위탁금) 인건비 1,762백만원, 사업·운영비 1,558백만원

※ '26년 예산과 제출안 기준으로 향후 변동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각호와 같다.

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

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」 제18조의2

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편성 중

다. 합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○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
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('25. 7.11.)
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, '25년 제6차 심의)

○ 향후 계획

-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 협약체결 : ~'25.12월

-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준공 : ~'26.3월

-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 : '26.6월 예정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손정훈 (☎ 2133-2694)